제1765호

2020. 6. 25.(목)

발 행 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 집 인 : 홍 보 미 디 어 과 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 화 : 02-2670-7554

영등포구보

규 칙

· 제77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제77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2

입법예고

· 제2020-106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 8

고 시

· 제2020-12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11
· 제2020-125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 12
· 제2020-12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2차) 고시 ····· 14

공 고

· 제2020-1075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 1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54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58-2020

규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
2020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77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를 “부과부서의 장은”으로, “하는”을 “처리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
2020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77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현원과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 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73	937	27	114	395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총계	1,468	934	25	114	395
3급 소계	1	1			
부 이사관	1	1			
4급 소계	9	7	1	1	
서 기 관	6	5	1		
서기관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65	33	2	12	18
행정	19	18		1	
행정 또는 사회복지	5	5			
행정,사회복지,보건 또는 환경	18				18
행정,공업,보건 또는 환경	1	1			
행정 또는 녹지	1	1			
행정 또는 별정	2		2		
시설	4	4			
행정 또는 시설	4	4			
행정 또는 보건	1			1	
행정,의무,간호 또는 약무	1			1	
의무 또는 약무	1			1	
의무	8			8	
6급 소계	307	218	6	19	64
행정	173	124	3	7	39
세무	22	22			
행정 또는 녹지	3	3			
시설	16	16			

기관별 / 직급별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공업	12	12			
행정 또는 공업	3	3			
행정 또는 별정	2		2		
행정 또는 전산	1	1			
행정,수의 또는 보건	1			1	
행정 또는 시설	14	14			
보건,공업 또는 환경	3	2		1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행정,약무,보건또는의료기술	1			1	
약무 또는 보건	2			2	
간호 또는 보건	1			1	
간호	3			3	
사회복지	10	6			4
행정 또는 사회복지	26	5			21
보건진료	1			1	
행정 또는 통신	2	2			
전기운영	1	1			
필기운영	1	1			
운전	5	5			
속기	1		1		
방호	1	1			
7급 소계	475	339	6	36	94
행정	199	129	4	11	55
세무	39	39			
사회복지	39	19			20
행정 또는 사회복지	52	37			15
공업	18	18			
녹지	4	4			
보건	6	3		3	

기관별 / 직급별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시설	25	25			
행정 또는 시설	14	14			
행정 또는 공업	1	1			
환경	3	3			
행정,녹지 또는 시설	1	1			
행정 또는 통신	4	4			
의료기술	3			3	
약무 또는 보건	3			3	
간호	13			13	
행정 또는 전산	3	3			
기계운영	2	2			
전기운영	5	5			
필기운영	6	4			2
운전	23	20		3	
시설관리	4	2			2
속기	2		2		
방호(경비)	6	6			
8급 소계	419	212	9	36	162
행정	119	62	3	8	46
세무	27	27			
사회복지	82	15			67
행정 또는 사회복지	50	34			16
공업	16	15		1	
녹지	4	4			
보건	5			5	
행정 또는 시설	25	25			
시설	10	10			
환경	1	1			

기관별 / 직급별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전산	4	4			
의료 기술	6			6	
간호	29	1		13	15
방재안전	1	1			
통신	2	2			
녹지 또는 시설	1	1			
필기운영	2	0	1	0	1
운전	21	1	2	1	17
시설관리	7	6		1	
속기	1		1		
방호(경비)	5	2	2	1	
원예운영	1	1			
9급 소계	190	122	1	10	57
행정	56	36	1	4	15
세무	13	13			
사회복지	48	8			40
행정 또는 사회복지	5	5			
공업	8	8			
보건	3			3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시설	12	12			
행정 또는 시설	7	7			
전산	2	2			
녹지	4	4			
농업	1	1			
환경	1	1			
방재안전	1	1			
통신	1	1			
행정 또는 전산	1	1			
의료기술	2			2	

기관별 / 직급별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식품위생	1	1			
운전	17	16			1
시설관리	6	5			1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화생방관리	2	2			
별정직 총계	4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상당 소계	2	1	1		
비 서	2	1	1		
8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06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1. 폐지 및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새로 제정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목적(안 제1조)
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제2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도시안전과장, 전화: 02-2670-3867, FAX: 02-2670-3854 또는 E-mail: flowerbybon@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 및 규칙안은 법제심사, 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규칙의 입법안은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와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 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재적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1항의 모든 호에서도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일을 최초로 위촉된 날로 본다.

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2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영등포구 대림동 663-13 필지 상 코리아신탁(주)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와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 업 명 : 대림동 663-13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 코리아신탁(주) 최익종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3.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대지위치 : 영등포구 대림동 663-13

나. 대지면적 : 678.7㎡

다.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라. 사업규모

- 동수 및 층수 : 1개동, 지하1층/지상6층
-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40세대

마. 연 면 적 : 1,437.32㎡

바. 사 업 비 : 금9,200,000천원

사.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사업진행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 처리현황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25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96 (신길동) 외 10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고시일 : 2020.6.2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69-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96 (신길동)	2020-06-25	2010-04-22	역사성이 많은 영등포 지명 인용	신규 부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1길 7 (영등포동7가)	2020-06-25	2010-05-27	버드나루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63 외 342필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8길 25 (신길동, 신길파크자이)	2020-06-25	2010-05-27	신길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147-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9길 17 (당산동2가)	2020-06-25	2010-05-27	영등포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폐지고시일 : 2020.6.25.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12길 19-1 (영등포동1가)	2020-06-22	2020-06-25	대장 말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길 19-1 (당산동1가)	2020-06-22	2020-06-25	대장 말소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81 (당산동2가)	2020-06-22	2020-06-25	대장 말소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83 (당산동2가)	2020-06-22	2020-06-25	대장 말소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2-2 (양평동5가)	2020-06-22	2020-06-25	대장 말소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63길 1 (신길동)	2020-06-22	2020-06-25	대장 말소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5가길 9 (대림동)	2020-06-22	2020-06-25	대장 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2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2차)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195호(2019.12.19.)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된 영등포구 대림동 990-80번지 일대 지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업의 명칭: 대림동 990-80 일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2. 사업주체의 상호·주소
   가. 상　　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3.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대지위치 : 영등포구 대림동 990-80일대
   나. 대지면적 : 6,118㎡
   다.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라. 사업규모(변경)
   - 층수 : 지하2층/지상20층
   -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212세대 / 주민공동시설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증감)
건축면적	1,674.82㎡	1,551.26㎡	-123.56㎡
연면적	25,221.29㎡	25,151.46㎡	-69.83㎡
용적률 산정 연면적	15,047.88㎡	15,043.84㎡	-4.04㎡
건폐율	27.38%	25.36%	-2.02%
용적률	245.96%	245.89%	-0.07%

- 세대별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형별	전용면적	세대수	형별	전용면적	세대수
49A	49.09	155	49A	49.01	152
49B	49.91	17	49B	49.47	20
49C	49.57	20	49C	49.10	20
49D	49.99	20	49D	49.08	20
총계	10,448.62	212	총계	10,402.52	212

마. 기타변경사항

- 101동, 102동 주동평면계획 변경
- 단지내 다목적광장 신설
- 102동 앞 소방도로계획 변경
- 분리 계획된 주민공동시설 통합 배치

바. 사 업 비 : 금100,731,841천원

사.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2개월(사업진행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 처리현황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신고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075호

공인 · 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조례 제9조,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폐기 및 동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공인 재등록 내역

공 인 구 분	공 인 명	규격 및 재질	인 영	전자이미지	등록사유	등록일
직인	문래동장인	2.1cm * 2.1cm 수지			이전 공인의 마멸	2020. 7. 1.

❍ 공인 폐기 내역

공 인 구 분	공 인 명	규격 및 재질	인 영	전자이미지	폐기사유	폐기일
직인	문래동장인	2.1cm * 2.1cm 수지			마멸	2020. 6. 30.